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공요금자문위원회)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, 소비자 부담,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通常産業部長官”을 “산업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**부 칙**

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◇물가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공공요금은 주무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던 것을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, 공공요금 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, 최고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7년 3월 29일

국무총리직무대행 권오규  
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

국무위원 권오규  
재정경제부장관

●법률 제8313호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割賦金融業者와 割賦金融契約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買受人(이하 “割賦金融利用者”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”를 “당해 할부금융업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(이하 “할부금융이용자”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(「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)에 의한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39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할부금융

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◇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전한 할부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이용자에 대한 거래조건 서면교부의무를 신설하고,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로 서면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며, 서면교부 대상인 거래조건에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노 무 현 인

2007년 3 월29일

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

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

●법률 제8314호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6조의2제3항 중 “반영하여야 한다.”를 “반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및 조치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회